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NH투자증권(주)

2. 제재조치일 : 2026. 5. 19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○ 과태료 44백만원
임원	○ 주의 1명
직원	○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

(1)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(처분금지 위반)

-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,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 - NH투자증권(주)는 A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.6.25.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총 225,061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상장 당일인 2018.6.27.에 동 주식을 전량 처분한 사실이 있고,
 - B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2022.12.9.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총 331,01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이 중 35,500주를 상장일인 2022.12.16.로부터 30일 이내인 2023.1.13.에 처분한 사실이 있음

(2) 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

-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,
 - NH투자증권(주)는 2021.6.1.부터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지수(인덱스) 개발 및 판매 업무를 영위하였으나, 해당 사실을 업무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인 2021.6.15.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자율처리 필요사항

(1) 위탁업무 보고의무 위반

- 금융투자업자는 제3자에게 본질적 업무가 아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,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,
 - NH투자증권(주)는 C와 국내지수산출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지수 산출 및 해당 지수 배포 업무를 위탁하였으나, C가 해당 위탁업무를 시작한 2021.6.10.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,
 - D와 해외지수산출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지수 산출 및 해당 지수 배포 업무를 위탁하였으나, D가 해당 위탁업무를 시작한 2022.2.22.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